

의안번호	2217626
의 퇴 인	진성준의원
회 답 일	2026.4.24.
추 계 번호	26D1595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등록재산대상에 사모펀드¹⁾를 추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,260만원, 2031년 43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540만원(연평균 1,11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등록대상재산에 사모펀드를 추가 (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)	42.6	—	4.3	4.3	4.3	55.4	11.1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'가상자산 관련 기능개선' 사업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다른 국가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조제2항(등록대상재산)	등록대상재산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사모펀드”라 함)을 추가함	의무규정

1) 개정안 제4조(등록대상재산)
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채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財産權)

가.~다. (생략)

라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사모펀드”라 한다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4조제2항(등록대 상재산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사모펀드 등록 및 공개에 필요한 공직윤리시스템 기능개선 비용을 추계하며, 공직윤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‘가상자산 관련 기능개선’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함
 -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(법률 제19470호, 2023.6.13.)으로 등록대 상재산에 ‘가상자산’이 추가됨에 따라, 재산등록·거래내역의 신고·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공직윤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음

[표 2] 공직윤리시스템의 가상자산 관련 기능개선 사업개요

· 소관부처: 인사혁신처
· 사업내용: 공직윤리시스템(PETI) 내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기능 등 추가
· 사업연도: 2024년
· 소요예산: 40백만원

자료: 인사혁신처 소관 2024년 예산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본 추계에서 사모펀드 재산등록 기능 개선사업의 단가는 2024년 ‘가상자산 관련 기능개선’ 사업 단가에 국회예산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²⁾을 적용하여 추정함
-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2)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 3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	2.1%	2.3%	2.0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직윤리시스템의 기능개선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추계함
 -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 후 1년은 무상이며, 차차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요율은 「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에 따라 10%를 적용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에 사모펀드를 추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,260만원, 2031년 43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54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시스템개발 (등록대상재산 추가)	42.6	—	—	—	—	42.6	8.5
시스템 유지보수	—	—	4.3	4.3	4.3	12.8	2.6
합계	42.6	—	4.3	4.3	4.3	55.4	11.1

주.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‘가상자산 관련 기능개선’ 사업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다른 국가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